(재)대구테크노파크 공고 제2020 - 0909호

「2020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확대 지원사업」 참여기업 모집공고

대구광역시와 (재)대구테크노파크 대구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는 지역기업의 **R&D 역량 강화 및 국가 R&D사업 참여 확대**를 위하여 「**2020년 대구지역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확대 지원사업**」을 다음과 같이 **공고**하오니, **지역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**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2020년 06월 01일

(재)대구테크노파크 원장

1 사업목적

❑ 단순생산형에서 기술혁신형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(이하, 연구소) 및 연구개발전담부서(이하, 전담부서) 미설립 기업 등에 대한 설립 지원

2 지원내용

❑ 지원기간 : 공고일로부터 ~ 2020. 12. 31

- 별도의 선정절차 없이 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·지원하며 컨설팅 기간을 고려 **2020년 11월 30일 까지 접수기업에 한하여 지원**

❑ 지원대상

❍ 지역 내 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 희망기업

❍ 지역 외 기업이 대구지역 내 설치 희망기업

❍ 기 설립 지원기업 중 재인정 희망기업 등

<지원대상 세부요건>

지역 내 기업	지역 외 기업
대구 내 연구소 및 전담부서 미인정 기업	사업 지원기간 내 대구 내 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 희망기업
• 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기업 •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설립하지 않았지만, 설립요건을 충족하거나 설립을 위해 요건을 보완할 예정인 기업	타 지역에 본사나 공장을 두고 있으면서, • 대구 내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설립요건을 충족하여 설립 예정 기업('20년 12월 까지) •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설립을 위한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기업 ※ 단, 타지역에서 대구 내 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 조건
• 기 지원기업 중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추가 자문이 필요한 기업 - 인정 취소 등으로 인해 연구소 및 전담부서 재인정 희망요청 기업 - 전담부서를 설립하였으나 연구소로 변경 설립이 필요한 기업 - 기타 연구소 및 전담부서 관련 자문이 필요한 기업 등	

❍ 지원방법 : 전문자문위원 파견을 통한 1:1 매칭 무료 자문(기업당 최대 3회)

- 연구소(전담부서) 인정을 위한 제반서류 작성·접수, 행정절차 및 혜택 안내 등
- 연구개발 활동 연계 지원 R&D 사업 소개 등

3 제외대상

❍ 필수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서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

❍ 기업이 부도인 경우

❍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조세체납처분이 있는 경우

❍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
❍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,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
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)

❍ 최근 결산일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

❍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 인 경우

❍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제재를 받고있는 경우

❍ 최근 3년간「근로기준법」제43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

❍ 최근 3년간「근로기준법」제43조3 및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

❍ 최근 3년간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9조의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

❍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으로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

❍ 최근 1년간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

❍ 그 외 현행 법령위반,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 보도, 소송,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공공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4 접수 및 문의

❍ 신청서 교부 및 안내 : (재)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(www.ttp.org)

❍ 접수기간 : 공고일로부터 2020. 11. 30까지 수시 접수

※ 예산 소진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

❍ 제출서류 및 방법

- 제출서류 : 붙임의 2020년 참여기업 신청서
- 제출방법 : 담당자 이메일(E-Mail : bjs732@ttp.org)로 제출

※ 반드시 한글파일과 날인 후 스캔 파일로 제출(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)

※ 신청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

❍ 문의처 : (재)대구테크노파크 대구과학기술진흥센터 (☎ 053-757-3731, 배진수 주임)

붙임 2020년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변경내용

1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가능 업종 확대

○ 현재 문화서비스 등 **19개로 지정된 서비스분야** 연구소 설립 가능 업종을 유흥업 등 **6개 업종*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**

* 일반 유흥주점업, 무도 유흥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 무도장 운영업, **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**

2 중견기업 매출액 확인요건 완화

○ **평균 매출액**과 상관없이 **중견기업에 대한 인적요건**을 **7명**으로 **일원화**

※ '**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**'에 따른 중견기업은 모두 **연구전담요원 7명 기준 적용.** 다만, 연매출액 5천억원 이상 중견기업은 대기업 기준(10명) 적용 중

현행

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범위(제2조제5호 관련)

업종	한국표준산업분류
위생서비스(산업)	3701 ~ 3900
소매	4711, 4731, 4781, 4791
운수 및 창고(산업)	4930 ~ 4940, 5210, 5294
출판	5811 ~ 5819
소프트웨어개발공급	5821 ~ 5822, 6201 ~ 6209
영화 및 오디오 기록물 제작	5911 ~ 5912, 5920
방송(산업)	6010 ~ 6022
부가통신	6121 ~ 6129
정보서비스	6311 ~ 6399
금융 및 보험(산업)	6412 ~ 6530, 6612 ~ 6620
광고	7131 ~ 7139
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	7140, 7153
건축공학 관련 서비스	7211
기타 공학 관련 서비스	7212 ~ 7292
기타 사업서비스	7310 ~ 7410, 7430, 7521 ~ 7599
교육기관(산업)	8550, 8561 ~ 8569, 8570
의료 및 보건(산업)	8610 ~ 8690
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	9011 ~ 9019
문화서비스(기타)	9021 ~ 9029

개선

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제외업종(제16조의2제4항 관련)

업종	한국표준산업분류
일반 유흥주점업	56211
무도 유흥주점업	56212
기타 주점업	56219
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9
무도장 운영업	91291
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	63999-1

3 연구소 상시 근무자 요건 명확화

○ **2개의 장소에 연구소**를 **설치**할 경우 **각 주소지**에서 **실질적인 연구개발활동**이 **수행**될 수 있게 **연구전담요원**(연구보조원도 가능) **상시 근무**토록 규정 정비

※ 자료 : 민간 R&D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가능 업종 확대 등 규제개선 법령 개정·공포 (과학기술정보통신부, 2020. 03. 03)